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은 전용, 제1,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촉지구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민중심의 계획수립 및 주민공동체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계획초기부터 주민중심의 마을계획 및 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공동체 활성화 지속이 가능하도록 자립토대를 마련한다.

관련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용어

정비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참고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From:
<https://www.conschoo.co.kr/> - DB World

Permanent link:
<https://www.conschoo.co.kr/%EA%B1%B4%EC%84%A4%EC%9A%A9%EC%96%B4/%EC%A3%BC%EA%B1%B0%ED%99%98%EA%B2%BD%EA%B4%80%EB%A6%AC%EC%82%AC%EC%97%85>

Last update: 2016/04/07 03:59

